

의사일정 제 항

2023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 해 시

(회 계 과)

2023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동해시장

1. 제안이유

2023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3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 3건 (취득 3건)

가. 취득

- 건물 : 2 건 840 m²
- 토지 : 1 건 3,578 m² (4 필지)

나. 처분

- 없음

3.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방법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담당 부서
			건수	면적(㎡)	재산가격	소요예산	
합 계	취득	토지	1	3,578	53	140	
		건물	2	840	3,200	3,200	
		기타	-	-	-	-	
	처분	토지	-	-	-	-	
		건물	-	-	-	-	
		기타	-	-	-	-	
상하수도사업소 주변 사토장 확보사업 토지 취득	매입	토지	1	3,578	53	140	도시 정비과
		건물	-	-	-	-	
		기타	-	-	-	-	
동물보호센터 시설물 신축	신축	토지	-	-	-	-	농업 기술센터
		건물	1	560	2,000	2,000	
		기타	-	-	-	-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신축	토지	-	-	-	-	
		건물	1	280	1,200	1,200	
		기타	-	-	-	-	

1. 대상 재산현황

○ 토지 취득

(단위 : m², 원)

연번	재산의 표시				취득 면적	공시 지가	기준가격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3,578		52,813,440
1	쇄운동	산14-5	임야	1,653	88	22,000	1,936,000
2	쇄운동	산24-2	임야	3,537	1,724	7,360	12,688,640
3	쇄운동	산24-6	임야	3,506	1,658	21,600	35,812,800
4	쇄운동	산24-11	임야	396	108	22,000	2,376,000

2. 재산의 취득사유 및 활용계획

○ 취득사유 : 최근 우리시가 발주하는 대형사업장은 사토장 부재로 인한 발생 잔토의 처리가 어려워, 사토장 확보 전까지 공사가 무기한 정지되는 등 공사 추진에 차질이 발생

○ 활용계획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사토장 활용

3. 사업개요

- 위치 : 상하수도사업소 정문 좌측의 구릉지
- 사업기간 : 2022. 10. ~ 2023. 12.
- 사업규모 : 사유지 3,578m² (쇄운동 산14-5 등 4필지)
- 총사업비 : 140백만원 (기준가격 52,813천원 × 약 2.7배)
- 소요재원 : 시비 140백만원

○ 사토장 개요

사토장 현황	위 치 도
☐ 편입면적 (총 14,200㎡) - 사 유 지 : 3,578㎡ (4필지) - 국공유지 : 10,622㎡ (7필지) ☐ 기타사항 - 매립토량 : 210,000㎥	

4. 추진현황

- (2022. 10.) 사토장 확보 계획수립

5. 향후 추진계획

- (2023. 1. ~ 2023. 12.) 토지보상 협의 후 계약
-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후 사토장 활용

6. 기대효과

- 우리시에서 계획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사토장을 사전에 확보하여
각 사업의 공기 단축과 효율성 제고
- 시 재산의 가치와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플러스알파의 무형의
가치 상승 예상

7. 참고자료

- 위치도 및 전경사진

참고자료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 치 도



전경사진



1. 대상 재산현황

- 건물 신축
 - 위치 : 송정동 1708 일대 (시유지)
 - 면적 : 연면적 560㎡ (지상 2층)

2. 재산의 취득사유 및 활용계획

- 취득사유
 -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의 복지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 유기동물 보호소 시설 낙후로 철거 후 동물보호센터 신축
- 활용계획
 - 동물보호센터 활용 (사육실, 진료실, 사무실, 민원응대실 등)

3. 사업개요

- 위치 : 동해시 송정동 1708 일대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규모 : 연면적 560㎡ (지상 2층)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 소요재원 : 국비 600백만원, 도비 420백만원, 시비 98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입찰

4. 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 건축비 1,800백만원, 용역비 120백만원, 기타 80백만원

5. 추진현황

- (2021. 9.) 동물보호센터 건립 부지 확보 계획 수립

6. 향후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및 동물보호센터 신축 공사
- 동해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7. 추진현황

- 반려동물 가구 수 증가에 따라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시민 의식 변화에 따른 대응을 통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 구현

8. 참고자료

- 위치도 및 전경사진

참고자료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 치 도



전경사진



1. 대상 재산현황

- 건물 신축
 - 위치 : 초구동 114-1, 114-2 (시유지)
 - 면적 : 연면적 280㎡ (지상 1층)

2. 재산의 취득사유 및 활용계획

- 취득사유 : 농업인의 영농기술 수준 향상과 신속한 기술지원을 위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운영으로 지역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 구축
⇒ 지역 농업인 만족형 농촌지도사업 확대 추진
- 농업용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친환경 농축산업실천 확대

- 활용계획 :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3. 사업개요

- 위치 : 초구동 114-1, 114-2 (시유지)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규모 : 연면적 280㎡ (1개동/ 지상 1층)
- 총사업비 : 1,200백만원
- 소요재원 : 국비 600백만원, 시비 60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입찰

4.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액	사업내용
계	1,200	-
시설 건축	1,000	철골조 시설 280㎡ 신축
설계 및 감리용역	70	시설신축 설계 및 감리용역
기반 정비	130	시설물 및 주변 기반 정비 토목공사

5. 추진현황

- 2022년 시설설치 부지 매입 : 2필지 3,371㎡(초구동 114-1, 114-2)
- 2023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균특(국비) 신청 : 600백만원

6. 향후 추진계획

- (2023. 1. ~ 2.) 시설설치 계획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
- (2023. 3. ~ 6.) 건축 설계용역 및 완료
- (2023. 8. ~ 12.) 신축공사 실시 및 완공

7. 기대효과

- 과학영농 및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공급 기반 구축으로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농업 신기술 보급의 중추 역할 수행

8. 참고자료

- 위치도 및 전경사진

참고자료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 치 도



전경사진



4. 관련법령

법령	조문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공유재산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 재산 관리계획은 다음 회계년도 시작 40일전까지 동해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